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최종태*

◇ 목 차 ◇

-
- I. 서 론
 - II. 방화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 IV. 방화범죄의 동기별 사례와 관심도
 - V. 방화범죄의 예방대책
 - VI. 결 론
- ABSTRACT
-

I. 서 론

1. 방화범죄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말할때는 방화와 실화를 듣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서 살인, 강도, 강간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 경민전문대학 교수, 法學博士

있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수반한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의 연평균 증가율(12.3%) 보다 더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15.4%), 인명피해는 연평균 12.9% 씩 증가하여, 전체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발생율(8.2%)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¹⁾ 이것을 주요외국과 비교할 때 '94년도의 미국의 증가율(1.8%)과 일본의 증가율(11%감소)보다 훨씬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²⁾

방화범죄는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국민이 느끼는 범죄와 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자료³⁾에 따르면 57%정도만이 범죄나 화재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방화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와같이 방화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인지할수 있는 문제는 “방화범죄의 급증과 이에 대응하는 관심도의 저조”를 제기할 수 있다.

방화범죄와 관련하여 또한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방화의 동기가 정신, 심리적 동기외에도 보험산업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경제적 이득사취를 노린 방화라든가, 기타 목적을 위한 방화등 동기의 다양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방화범죄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화범죄에 관한 예방 및 통제에관한 조사, 연구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방화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선행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방화 범죄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방안 이외에 자율소방 및 민간경비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첫째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연구경향과 제기된문제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두번째는 방화범죄와 방화범죄인의 실태와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실태에

1) 내무부, 95화재통계연보. 소방국: 1995.

2) 1994년도 미국의 방화화재는 전체화재의 14%에 해당하나 전연도에 비하면 1.8%가 증가하였고, 일본은 방화및 방화에 의심이 있는 화재가 전체화재의 20.2%차지하나 전연도 대비 증감율은 11% 감소하였다(NFPA Journal, 1994. sep 10ct. p.93와 소방백서 (소방청) 1995).

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및 (주)아시아리서치, 소방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있어서는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이 어떠한가를 주요외국의 실태와 비교·분석하고 방화범의 방화동기와 특성, 그리고 검거실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방화사례를 가능한한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동기및 사례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끝으로 방화범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범위로 연구를 할때는 실증적조사등 여러가지 방법이 소요될 수 있겠으나, 연구에 따르는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과 자료및 사례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 가운데, 방화범죄에 대한 관계문헌과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방재시험소, 한국소방안전협회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였고, 또한 방화범죄인의 실태와 동향에 관하여는 범죄백서(법무연수원), 화재통계연보(내무부), 소방백서(日本自治省消防廳),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FIRE JOURNAL(N.F.P.A)등을 참고로 하였고 방화화재의 사례는 일간지 신문의 기사와 화재사례집(내무부), 기타 화재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방화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방화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방화범죄의 원인을 방화 및 방화범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준거, 그리고 선행 연구조사이다.

1. 방화범죄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방화법에 대하여 형법상의 개념에 따르면 “방화의 죄”는 공공의 평온을 법익으로 하는 일종의 공공위험죄로 “불을놓아”객체를 소훼하는 행위이다. 방화의 개념에는 “불을놓아”목적물을 직접소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접한 물건들에 연소케하는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성립이 가능하며 진화방해 행위도 방화에 포함되는 행위로 본다.⁴⁾

현행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화죄의 유형은 ①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형법 제 164조), ②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형법제 165조), ③일반건조물의 방화죄(형법제 166조), ④일반물건에의 방화죄(형법제 167조), ⑤연소죄(형법제 168조), ⑥진화방해죄(형법제 169조)가 있고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방화대상물의 범위와 소훼의 정도에 관하여는 판례가 있다.⁵⁾ 방화죄의 처벌은 유형별로 다르나 법정형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어 형벌의 엄격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방화범죄의 발생은 급증하고 있어 기존의 법적 사회통제적 정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것 같다.

2. 방화범죄의 이론적 배경

이 연구의 범위는 방화로인하여 발생한 화재의 동향을 규명하려는 것이므로 방화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죄이론 가운데 방화범죄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당한 이론을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의 동기(원인)는 주로 정신이상, 강정불화, 주벽, 싸움, 방화자살이다. 이러한 방화의 동기에 따라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Mertom과 Durkhein의 Anomie이론을, 그리고 방화범에대한 대책과 관련한 이론에는 처벌의 과정을 엄격성과 신속성, 그리고 확실성의 3가지 차원에두는 제지이론(Deterrence Theory)을 준거로 할것이다.

가. 탈규제와 무규범

Durkhein의 아노미 이론은 그기반을 사회적 연대가 강한집합의식에서 약한집합 의식으로 변동 한다는데 두고, 아노미는 주로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으로 이때에는 이전의 기준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 규범의 진공상태인

4) 방화의 정의에 관하여 Dehann은 방화범죄는 일반적으로 고의와 악회(willful and malicivus)로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Burning) 행위로 정의한다(JOHN D. DEHAAN. KIRK'S Fire investigation. p.323).

5) ① 가옥의 일부로서 되어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물 방화에 해당한다(대법 1967.8.29. 67도925).

②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1970.3.24. 70도330).

무규범 또는 탈규제의 상태, 즉 사회가 통제력을 잃어버린데서 생긴다는 것이다.⁶⁾

Durkheim은 그의 자살론에서 아노미적 자살은 산업 및 기업계의 사람들이 많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였는데, 급격한 사회변동은 사람들에게 목표와 수단간의 괴리를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자살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Durkheim은 사회적 비통합(disintegration) 혹은 비규제(deregulation)는 규범위반을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정책적 시사는 사회의 통합과 규제를 증가시키면 가능하다는 것이나, 실현 가능성성이 희박하다는 비판도 있다.⁷⁾

나. 사회구조와 아노미

Merton은 사람의 목적과 수단간의 괴리는 아노미를 형성하고, 이 아노미는 사람의 성공목표가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수단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때, 규범위반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Merton이 제시한 사람들의 아노미 적응방식에는 동조(Conformity), 혁신(innovation), 의례주의(ritualism), 폐배주의(retreatism) 및 반역(rebellion)을 들고 있다.⁸⁾

Merton이 제시한 아노미 적응방식은 최근 발생하는 방화사례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타당한 이론이라 여겨진다.

다. 제지이론

제지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의 특수한 경우로서 사람들은 규범을 위반하도록 동기화 되어 있지만 사회통제로 인하여 규범을 위반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인간의 내적 통제보다 외적통제(국가의 법집행)를 중시하여,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이 받는 손해(고통)가 크면 클수록 범죄의 발생율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의 3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6) 심영희. *비판범죄론*, 법문사. 1987. pp.21~25에서 인용.

7) Liska, 일탈의 사회학, 장상희역. 경문사. 1986. p.76

8) Liska. 일탈의 사회학, 장상희역. 1986. p.55

3. 선행연구의 고찰

가. 미국의 연구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방화범죄는 단지 재산에 관한 소수의 범죄 유형으로 치부해왔으나 1979년에 이르러 방화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FBI에 의하여 방화 범죄는 1급 범죄(part I crime)로 분류되고, 1982년에 “방화단속법”(The Arson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방화화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⁹⁾

(1) Patrick J. Ripelle의 연구

Ripelle의 연구를 요약하면 ①방화범죄의 목표(target)는 아파트, 가옥, 상점이 가장 많다. ②방화범죄자들은 난령별로는 18세 이하가 가장 많고(59%), 성별로는 남성이 90%이고, 백인이 80%를 차지한다. ③방화범의 수사는 범죄수사 기술이 부족한 소방관이 전담하므로 검거율이 저조하다.

방화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소방관의 공조수사 체제의 확립과 전담수사관의 수사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P. Anderson과 Joh T.Surchy

P.Anderson은 호주에서 방화범죄의 증가율이 50% 이상(10년간)이며, 그 피해는 막대하다는 지적을 하였다.¹⁰⁾ 그가 제시한 대안은 방화범죄를 다루는 관리자들은 상호협력적 대처라고 하면서, 그 행동 영역으로는 ①방화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②방화범죄의 수사기술의 향상과 방화범죄 예방책 강구라 하였다.

John T. Surchy(1976)는 “방화범죄에 대한 협조적 대처방안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9개 영역에 걸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¹¹⁾

① 방화문제와 관련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9) DeHAAN J. D., KIRK'S Fire investigation(third Ed., Englewood cliffs, 1991.p.347

10) P.Anderson(1983) "Arson" in C.R.bevan(ed.) 「National conference on Arson」,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31~34.

11) John T. Surchy(1976), "Arson : America's Malignant Crime", NFPCA.

* surchy의 이러한 제안들은 정책으로 수용되었는데, 국립소방대학의 방화범 검거 및 수사 과정의 설치와 방화정보센타 설립, 그리고 방화범죄의 제 1종 범죄분류 등이 그것이다.

- ② 주요범죄 보고체계에 방화범죄 재분류
- ③ 방화범죄 결과및 필요성을 주민에게 알릴것.
- ④ 관련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적용
- ⑤ 방화범죄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할것(관련기관)
- ⑥ 효과적인 법 규칙적용 공표
- ⑦ 방화범죄 대항을 위한 적정지원금 확보
- ⑧ 방화범죄 수사기술 개발
- ⑨ 방화에 관련된 일관된 용어 개발 획일화 도모필요

(3) Clifford L. Karchmer의 연구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지역이 방화범의 목표지역이 되는가”하는 문제에 접근하여 방화범의 목표지역을 파악하고 이 지역을 중점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²⁾

Clifford는 재정적인 압박은 방화범죄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며,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건물은 잠재적인 방화의 위협이 있다고 보아, 소유주나 지역내의 해당기관에 알려 방화를 사전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을 수용한 예로는 메사츄세츠주의 CAPES(*)프로그램과 뉴욕 소방본부의 Red cap 프로그램이 있다.

나. 일본의 경우

일본의 방화화재 연구는 1986. 6. 23. 동경소방청에 “방화화재 예방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平成元年 3月(1989) 이 위원회에서 실시한 “방화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제3차)”는 방화화재예방대책을 제시한 것인데 방화화재 예방의 전략적 분야를 ①도시계획과 건축환경면 ②사회심리, 청소년등의 교육면 ③법제, 행정면으로 대별하고 분야별로 방화화재의 특징과 방화대상 및 대표적인 방화사례를 분석한 토대위에 적정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2) Clifford L. Karchmer(1983) "Preventing Arson Epidemic : The Role of Early Warning Strategies".

Battelle Memorial Institute Law and Justice Study center. pp.2~3.

* CAPES(Comprehensive Arson Prevention and Enforcement System)

다. 한국의 방화 범죄연구실태

우리한국은 최근(5년여 동안)들어 방화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반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한것 같다. 이것은 방화범죄가 형법상의 다른 중요범죄만큼 위험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방화는 공공위험범으로서 인명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재산피해도 극심하다는 사실을 대체로 간과하는 것같다.

그것은 방화화재의 특성이 정신이상성등 개인의 인성적 동기라 할수 있는 종래의 사례들에서,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이 때문에 방화화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저조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방화화재에 대한 법집행 차원도 또한 저조한 관심의 상태를 엿볼수 있는데, 그것은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취급하는 전담기구가 전무한 상태이고, 다만 관할 검찰청별로 방·실화 수사담당검사가 지명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이런상태에서 방화범죄에 대한 조사, 연구도 매우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방화관련 선행연구는 ①방화죄에대한 형법적 논의와 ②방화화재의 예방대책에 관한논의(최종태)가 있었고 ③방화범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 있을 정도이다.¹³⁾

한국형사정책연구원¹⁴⁾의 연구에 의하면

(가) 방화범죄의 증가추세는

- ① 방화범죄의 발생급증과 피해의 심각성인지.
- ② 방화범죄의 특성은 남성범죄자가 90%이고, 20대 범인이 가장 많고, 학력 별로는 고학력자가 많아 범죄의 지능화 추세를 보인다.

(나) 증가에 대한 대응책

- ① 방화범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의 파악.
- ② 방화범죄 전담기관의 필요

13) 방화범죄에 대한 형법적 쟁점논의에 관한 연구는 황진영, “방화죄의 제문제”, 「검찰」 통권 43호, 1971과 이홍수, “방화죄의 기수시기”, 「검찰」 통권 43호, 1971.이 있다.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92년도 연구과제물)연구 보고서이다. 방화화재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에는 최종태, “방화화재 예방대책에 관한연구”, 한국화재학회, 통권 10호가 있다.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2년도 연구과제인 “방화범죄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실시한 한국의 방화범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 ③ 방화범죄의 인센티브가 되는 요소의 근절
- ④ 화재조사의 전문성 제고
- ⑤ 방화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선행연구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방화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유사한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①방화에 대한 일반사회의 무관심속에 최근 그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②그럼에도 방화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의 인지도는 저조하며 이에 대한 교육·홍보체제도 미흡하다는 것과 ③방화범죄의 수사기술 미흡으로 방화범인의 검거율 저조 및 ④방화관련 전담기구의 미흡이란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연구는 여러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부당국이 정책으로 수용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수 있다.

(1) 방화범죄 수사 전문 교육실시

John T. Surchy가 제안한 대안(①~⑨)을 미국 연방정부가 수용하여 구립소방대학에 방화범죄 및 범인검거와 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방화관련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방화범죄의 범죄 재분류

방화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방화범은 FBI의 Uniform crime Report에서 제1종범죄로 분류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3) 방화범죄의 예방 PROGRAM 개발활용

Clifford L. Karchmer의 제안을 수용하여 메사추세츠주의 CAPES프로그램이라든지 뉴욕 소방본부의 RED CAP PROGRAM등은 방화화재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일본의 동경소방청 방화화재예방대책위원회

일본은 동경소방청에 방화화재예방대책위원회를 1986년에 설치하고 방화화재의 예방에 관한 연구를 3개년에 걸쳐 체계있게 실시한바 있으며(1987~1989), 이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야별 접근방법(도시계획 및 환경적, 사회심리학적, 법적, 제도적 접근)에

따라 대부분 방화화재 예방정책의 주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국의 선행연구와 방화대응정책들은 방화관련 분야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우리에게 그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II.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1.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가. 한국의 발생추세

(1) 방화범죄와 다른 범죄

방화범죄는 검찰청 통계사무규정에 따라 형법범종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95 범죄백서(법무연수원)에 의하면 방화범죄의 발생추세는 이를 강력범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1>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

구분 연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1985	600	100	3135	100	5453	100	476	100
1990	666	111	4195	134	5519	101	1060	223
1991	630	105	2766	88	5175	95	1048	200
1992	615	103	2549	81	5447	100	1064	224
1993	806	134	2876	92	7051	129	1906	190
1994	705	118	4469	143	6169	113	715	150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5. p.49》

<표 3-1>에 의하면 1985년도를 지수 100으로 했을 때, 1994년의 범죄별지수는 살인이 118이고, 강도는 143, 강간은 113인데 비하여 방화는 150으로 그 증가율이 가장 높게 발생하였다. 방화범죄는 1990~1992사이에 매우 높게 발생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감소추세에 있다.

(2) 방화범죄의 목표

방화의 목표가 되는 대상(장소)은 ①차량 방화 ②주택 방화 ③점포 ④공장·작업장 ⑤음식점의 순이다. (표 3-2)

<표 3-2> 방화범죄의 대상물(1995)

구 분	계	주 택	차 량	음식점	공·장 작업장	점 포	사 업 장	기 타
건 수	2106	506	925	80	88	119	54	334
%	100	24	43.9	3.8	4.2	4.7	2.6	15.9

〈출처 : 내무부, 95 화재통계연보, p.59〉

차량방화는 (표 3-2)에 의하면 방화목표 1호대상으로 (43.9%) 최근의 사례를 보면 거의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그 동기는 악희(vandalism) 및 손괴목적으로 여겨진다. 주택방화는 두번째 목표(24%)인데, 인명피해 우려가 가장높게 나타나는 곳이다.

(3) 방화화재의 발생 및 피해상황

“95화재통계연보” 따르면 (표 3-3)처럼 최근 5년동안 (1991~1995)한국에서 발생한 전체방·실화의 발생율(95→26071건발생)은 연평균 12.3%씩 증가하는데 비하여, 방화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15.4%씩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명피해면에서도 전체화재의 사망자는 연평균 5.3%씩 증가하는데 비하여 방화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율은 연평균 10.1%씩 증가(95→사망자 156명)하는 추세이다. 방화로인한 재산피해는 6,241백만원(1995)으로 이것은 전체 화재피해액의 6.2%이다.

재산피해는 전체화재에서 연 38.4%씩 증가하는데 방화화재에서는 매년 30.7%씩 증가하고 있어,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의 증가율은 전체화재의 증가율보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방화로 인한 사망자의 발생비율은 전체화재 사망자의 27.3%를 차지하여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심각하다.¹⁵⁾

15) 1995년도에 방화로 인하여 소사한 사망자의 수는 156명이고 전체 화재로 인하여 소사한 사망자의 수는 571명으로, 방화화재 사망율은 전체 화재사망자의 27.3%에 이르고 있다(내무부, 95화재통계연보, 1995. pp.57~58).

<표 3-3> 방화화재 발생상황

연도 구분	'91	'92	'93	'94	'95	9연평균증가	
						건 수	%
건 수	1,312	1,747	1,670	1,824	2,106	199	15.4
인명피해 (사/상)	108/169	126/204	107/158	105/208	156/271	12/26	10.1/6.1
재산피해 (백만원)	2,294	3,161	3,056	4,952	6,241	987	30.7

<출처 : 내무부, 95'화재 통계연보, p.57>

나. 미국의 발생추세

미국은 전국적으로 1977년에 3,264,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1995년에 전년도대비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4,585명이 사망하였다(전년대비 7.3% 증가). 이런 가운데 방화화재의 발생율도 전체화재의 감소추세와 함께 5개년(1991~1995)동안 감소추세에 있다. <표 3-4>에 따르면,

<표 3-4)¹⁶⁾ 방화화재의 발생 및 피해상황(미국)

피해액의 단위 : billion

연도별 구 분	'91	'92	'93	'94	'95	연평균 증가율(%)	
						발 생	피 해 상 황
발 생	건 수	62,000	58,000	54,000	53,000	57,500	56,900
	증감율(%)	6.0	-6.5	-6.9	-1.9	1.8	-1.5
피 해 상 황	사망자수	365	465	415	410	570	445
	증감율(%)	-35.4	27.4	-10.8	-1.2	39.0	3.8
	피해액	\$1.072	\$1.493	\$1.901	\$0.964	\$1.166	\$1.319
	증감율(%)	22.5	39.3	27.3	-49.3	15.8	11.12

<출처 : NFPA Journal, NFPA'S latest Fire loss figures. 1991~1995에서 재작성한것임>

16) (표 3-4)에서 사용된 통계에는 방화원인 화재에 한정하였고, 원인이 방화의 의심있는 화재는 제외하였다. 1995년도의 통계에는 1995년 4월 19일 oklahoma city의 Federal office Building 폭파·화재사고의 사망자(168명)가 포함되었음.

방화화재는 (방화에 의심이 있는 화재는 제외) 그 발생율이 지난 5개년 동안 연평균 1.5%씩 감소하고 있으며 방화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 평균 11.12%씩 증가하였다. 1995년도에 방화로 사망한 사람은 570명으로 이는 방화화재 1,000건당 10명 정도이다.

다. 일본의 발생경향

평성 5년에 발생한 전체화재는 56,700여건이며 그 1위를 차지하는 화재원인은 방화에 의한 화재이다.

방화화재는 같은해에 11,437건이 발생(전년도에 비하여 11.0%증가)하여 전체화재의 20.25%에 해당한다. 화재사망율은 인구 10만명당 1.49명꼴인데, 방화자살자는 647명이 발생하여 전체화재 사망 1,841명의 35.1%를 차지하고, 이것은 전년도의 방화자살자 679명에 비하여 감소경향을 보인다. 방화 또는 방화의심있는 화재로 인한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20.4%가 증가하고 있다.

<표 3-5> 방화또는 방화의심 화재 피해상황

(평성 5년)

구 분	계	방 화	방 화 의 심
출 화 건 수	11,437	6,562	4,875
소 실 면 적	163,487㎡	88,365㎡	75,122㎡
손 해 액	212억엔	120억엔	92억엔

〈출처 : 소방청, 소방백서, 1995. p.27〉

방화자살자는 (표 3-6)에서처럼 나이별로는 40대(170명)가 가장많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방화화재의 발생시간은 야간에서 심야(20:00~04:00)까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54%), 방화범은 야간에 은밀한 활동을 선호한다고 하겠다.¹⁷⁾

17) 소방청, 소방백서, 1985. p.23~26.

<표 3-6> 방화자살자의 발생상황(일본)

연령별	성 별	계	남	여
10대		21	15	6
20대		69	47	22
30대		99	61	38
40대		170	113	57
50대		158	103	55
60대		66	37	29
70대 이상		55	28	27
	계	638	404	234

*성별, 년령불분명 9명을 제외

《출처 : 소방청, 소방백서, 1995. p.24에서 재작성》

2. 방화범죄의 특성

방화범죄는 범죄에 이용되는 범죄 공용물이 다른 범죄와 달리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방화범죄의 동기를 종래에는 이상성격이나 이상심리에 원인을 두는 인격적특성¹⁸⁾을 강조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 범죄집단의 폭력행위라든지 경제적이익 사취목적 방화 등 사회환경적 특성의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 방화범죄의 특성 대비

(1) 발생지역적 특성

방화범죄의 발생지역적 특성을 다른 범죄의 특성과 (표 3-7)에 따라 비교하면, 강도 데 있어서는 대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살인, 강간, 방화는 도시이외의 지역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도·농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좁아져서 Merton의 아노미 이론처럼 사람들의 목표성취 열망과 성취와의 현실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가 과격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18) 이상현, 전계서, pp.335~337.

<표 3-7> 방화범죄의 발생지역 비교(1994)

구 분		계	대도시	중·소도시	도시이외
범죄명	건수	715	472	74	169
	%	(100)	(66.0)	(10.3)	(23.6)
발생지역	건수	705	435	75	195
	%	(100)	(61.7)	(10.6)	(27.7)
강도	건수	4,469	3,658	335	476
	%	(100)	(81.9)	(7.5)	(10.7)
강간	건수	6,169	4,129	611	1,429
	%	(100)	(66.9)	(9.9)	(23.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5. p.52에서 재작성한 것임.〉

(2) 발생시간적 특성

방화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표 3-8)에서 보는 바처럼 대개 밤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56.7%) 이것은 방화범죄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하여 야간을 범행시간대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표 3-8> 방화범죄의 발생시간대 비교(1994)

범죄별	구분	계	발 생 시 간 대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방화(%)	100%	7.0	2.8	6.2	16.2	5.5	44.2	18.2
살인	100%	7.5	4.5	7.9	14.8	7.4	39.3	18.6
강도	100%	7.3	1.8	5.7	13.6	4.1	48.0	20.4
강간	100%	7.4	2.2	4.1	13.9	4.5	44.2	23.7

〈출처 : 범죄백서, 1995. p.52에서 재작성〉

범죄별로 시간대순을 보면, 방화의 다발시간대는 ①밤 ②오전 ③새벽 순이고 살인은 ①밤 ②오후 ③오전의 순이다. 또한, 강도는 ①밤 ②오후 ③새벽의 순으로 발생한다.

나. 방화범죄의 특성

(1) 방화범의 검거단서와 기간

방화범의 검거단서는 ①현행범체포(37.5%) ②피해자신고(31.5%) ③제3자신고(13.9%) ④수사활동(7.5%) ⑤자수(3.7%)의 순이다.¹⁹⁾ 이와 아울러 범인의 검거기간은 (표 3-9)에서처럼 대부분 1일 이내에 검거(83.9%)되고 나머지는 10일 이상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여 검거되는 것도 적지않아 범죄수사가 장기화 내지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방화범 수사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화범의 필검체제를 확립하여 철저한 계속수사 활동이 요망된다.

<표 3-9> 방화범의 검거단서 및 검거기간(1994)

구 분 건 수	검 거 단 서 별						검 거 기 간 별									
	계	피해자 신고	제3자 신고	현행범 체 포	수사활 동	자수	기타	계	1일 이내	3일 이내	10일이 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상
검 거 건 수	682	215	95	256	51	25	40	682	572	1	1	30	44	11	10	13
검거율 (%)	100	31.5	13.9	37.5	7.5	3.7	5.9	100	83.9	0.1	0.1	4.4	6.5	1.6	1.5	1.9

《출처 : 범죄백서, 1995. p.53에서 재작성》

(2) 방화범의 연령별 구성비

1994년의 방화범의 연령별 구성비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50대와 60대에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에서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가장낮은 발생율(8.2%)을 나타낸다. (표 3-10)을 종합할 때 방화범은 살인 등 범죄의 연령대에 비하여 20대는 가장 적게 분포되었으나 30대는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19) 범죄백서, 1995. p.53.

<표 3-10> 방화범의 연령별 구성비 대비(1994)

연령 \ 죄명	방화	살인	강도	강간
계(%)	100	100	100	100
20세 미만	8.2	8.5	53.1	11.3
20대	25.3	31.9	29.7	39.8
30대	41.0	32.9	7.0	28.1
40대	14.9	13.5	1.5	10.9
50대	5.9	6.1	0.3	5.7
60대 이상	1.4	3.2	0.1	1.8
미상	3.4	4.0	8.4	2.5

〈출처 : 범죄백서, 1995. p56.에서 재작성〉

또한, 50대 이상 연령층에도 상당수의 분포율(5.9%)을 보이고 이것은 살인 다음을 차지하여 범죄의 고령화를 시사하고 있다.

(3) 방화범 교육정도별 구성비

방화범의 교육정도 구성비는 (표 3-11)과 같이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53.1%, 고등학교 학력자가 29.4%이고, 대학교 이상 학력자도 7.7% 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표 3-11> 방화범의 학력별 분포대비(1994)

학력별 \ 범죄별	방화(%)	살인(%)	강도(%)	강간(%)
계 : 13,549	649 (100)	727 (100)	6,523 (100)	5,650 (100)
중학교이하	345 (53.1)	359 (49.4)	2,175 (33.3)	2,066 (36.6)
고등학교	191 (29.4)	219 (30.1)	3,163 (48.5)	2,378 (42.1)
대학교이상	50 (7.7)	57 (7.8)	268 (4.1)	675 (11.9)
미상	63 (9.7)	92 (12.7)	917 (14.1)	531 (9.4)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5. p57〉

이와같은 학력수준의 분포는 방화범의 고학력 수준의 경향으로 분석되어 사람의 인성형성 과정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4) 방화범의 전과 회수별 구성비

<표 3-12>에 보는 바와 같이 방화범의 범죄전력회수 구성비는 초범자가 47.8%로 가장 많고 4범이상의 전과자가 16.5%로 두번째이다. 이것은 전년도의 13.9%에 비하여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정책에 높은 관심을 요하게 된다.

<표 3-12> 방화범의 전과회수별 구성비(1994)

구 분	전과회수	계	전과없음	전과 1범	전과 2범	전과 3범	4범 이상	미상
인원수		649	310	84	64	42	107	42
구성비(%)		100	47.8	12.9	9.9	6.5	16.5	6.5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5. p.58에서 재작성》

3. 분석결과의 논의

가. 방화화재의 증가추세

한국에서 방화범죄의 발생을 최근 5년동안에 살인, 강도, 강간 등 다른 강력범의 발생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방화로 인한 화재의 증가율은 전체화재의 연평균 증가율(12.3%)보다 높은 발생추세(연평균 15.4%)를 보인다. 또한 방화범죄로 인한 사망자 증가율(연평균 10.1%)은 전체화재의 사망자증가율(5.3%)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은 추세이다. 방화화재의 발생추세를 미국과 일본 등 주요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한국은 발생 및 피해면에서 이들 국가들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우리한국에서는 방화범죄의 동기를 주로 방화범의 개인적 인성적 결함에서 보아온 경향이 있어 방화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저조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 방화범죄의 특성

방화범죄는 발생지역별로는 ①대도시지역과 ②도시이외지역 및 ③중,소도시지역의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인의 생활문화가 도시와 농촌간에 큰격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Durkneim의 문화적 차이이론과는 시대적으로 불일치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방화범죄 발생시간은 다른 강력범과 같이 주로 야간에 범죄를 하는 은밀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방화 범죄 취약시간대인 야간의 경계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 방화범죄의 특성

방화범인의 겸거단서는 현장에서 겸거되거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겸거(69%)되고 수사활동을 통한 겸거는 저조(7.5%)한 설정이다. 그리고 범인의 겸거기간은 상당수가 범행당일에 겸거(83.9%)되지만 1년을 넘어서 겸거되는 경우(1.9%)가 있다는 것은 방화범의 수사및 겸거체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방화범죄인의 나이별 구성비는 소년층보다 주로 30대에서 높게 나타고있어 미국의 방화범이 청소년층에 높은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령화 추세의 경향도있다. 방화범의 교육정도는 중학교이하의 저학력층(53.1%)과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36.8%)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인성형성과정(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IV. 방화범죄의 동기별 사례와 관심도

1. 방화범죄의 동기

방화범죄의 동기는 이론상으로 방화목적에 따라 분류하나, 실무상으로 방화행위의 원인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가. 방화범죄의 일반적동기(목적)

(1) John D. Dehaan

John D. Dehaan²⁰⁾은 방화의 동기를 방화범의 범행목적에 따라 ①비이성적 방화광

(irrational pyromania) ② 이익사취 목적방화(fraud) ③ 증오/분노/보복(Hate/ Spite/ Revenge) ④ 쾌감/악희(Thrill Seeking/Vandalism) ⑤ 영웅심/허영심(Hero/Vanity) ⑥ 사회적 저항/테러목적방화(Social protest/Terrorism) ⑦ 다른 범죄 은닉목적 방화(Concealment of Another Crim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D. L. Rosembauer

D.L. Rosembauer는 “The Arson Epidemic”²¹⁾에서 방화동기를 ① 악희(Vandalism) ② 방화광(Pyrumania) ③ 이익사취방화(Arson-for-profit) ④ 범죄은익방화(Crime Concealment) ⑤ 보복/원한(Revenge/Spit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이상현 교수(동국대)

이상현교수는 “범죄심리학”에서 방화의 동기를 ① 보험사기 목적방화 ② 범죄은폐방화 ③ 사업경쟁목적 ④ 원한·보복목적 ⑤ 스릴추구형 방화로 분류하고 있다.²²⁾

나. 소방행정 실무상의 동기 분류

'95 화재통계연보(내무부)에 따라 분석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방화동기별 현황은 (표 4-1)과 같이 ① 가정불화 ② 비관자살 ③ 싸움 ④ 주벽 ⑤ 정신이상의 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상으로 분류한 형태이다.

<표 4-1> 동기별 방화화재 발생상황

연도별	방화동기	계	가정불화	주벽	정신이상	싸움	비관자살	기타
1991		1,312	216	63	58	157	83	735
1992		1,747	316	87	107	245	166	826
1993		1,670	304	116	107	206	236	701
1994		1,824	409	110	70	191	173	871
1995		2,106	457	124	116	224	241	944
연평균	건수	199	36.5	15.8	14.3	17	39.5	52.3
증가	%	15.4	29.4	7.9	24.1	11.8	26.3	6.4

《출처 : 내무부, '95화재통계연보, 1995. p.58》

20) O. JOHN. KIRK'S Fire investigation, Prentice Hall, Inc., 1991. pp.324~331.

21) D.L. Rosenbaur, The Arson Epidemic(Book one), NFPA 1981. pp.8~13.

22)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개정판), 1994. pp.55~62.

2. 방화범죄의 동기별 사례

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

경제적 이득을 사취할 목적의 방화유형은 그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로서 최근의 보험산업의 발달과 보급의 확대에 따라 신종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방화로서 가옥소유자에 의한 자기건물방화가 대부분이다.

▣ 자기공장 방화사례

“전국을 돌며 공장을 설립한뒤 불을 지르고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검찰에 적발 되었다.”는 기사(중일일보, 1996. 10. 23. p.23기사)에서 보면 충북 제천 동부산업대표 한○○와 공장장 김○○ 등은 1995년 3월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에 섬유 회사인 ○○섬유를 설립 K해상보험에 3억원짜리 화재보험에 가입한후 1996. 4. 27. 오후 4시경 공장에 방화하여 2억 5천 4백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1995. 3. 14일에도 인천○○산업(한○○소유)에 방화한 후, J화재해상으로부터 2억 4천 8백만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형광등 인입선의 피복을 벗겨 핵선시킨뒤, 스위치를 켜 방화케하고 누전에 의한 사고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나. 증오/분노/보복

여기에 해당하는 방화사례는 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남여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가구주와 세입자의 관계 등)의 불안정과 갈등관계가 동기가 되어 시작된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대인관계는 대개 특정인에 한하지만 부특정 다수인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주) 섬유공장 방화사례

1994. 12. 3. 05:5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섬유회사 기숙가옆 원사창고에 방화 한 사건이 있었다. 이사건은 주유공으로 근무하는 이○○(남:16세)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데 원한을 품고, 여자친구의 직장인 위의 공장에 방화한 것이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나이트클럽, 거성관 방화사례

1991. 10. 17. 21:50경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거성관이라는 나이트클럽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사건의 동기는 범인(30세남자)이 나이트클럽 입장과 관련하여 업체종업원과 다툼 후 격분하여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ℓ를 구입, 비상구를 통하여 입실하여, 무대위에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분풀이가 방화의 동기였다. 이 화재로 방화 범의 증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고한 시민(나이트클럽의 고객) 16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방화범은 현장에서 검거 되었다.

☞ 강도사건 은폐목적 방화사례

1984. 3. 8. 13:40경. 성동구 성수동 ○○연립주택 2층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사건의 동기는 어린이 2명이 집에 있는데 30대 가량의 범인이 침입,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강도한 후 어린이들을 소사케하고 강도의 증거를 인멸, 은닉할 목적이었다. 다행히도 어린이들은 구조되었고, 범인은 3일 후에 검거되었다.

☞ 살인사건 은폐목적 방화사례

1991. 3. 5.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주택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현장에는 타살로 추정되는 사체(여)가 1구 발견되어 수사결과 범인은 검거되었다. 범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데 격분하고 살해한 후, 살인을 위장할 목적으로 방화한 것이다.

라. 악희목적 방화(Vandalism)

악희목적방화는 일종의 문명사회에 대한 반발심리로서 불특정인의 재산이나 기물을 불을 놓아 소훼하고 만족감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이유형에 속하는 방화는 미국에서 매우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으며(전체방화 화재의 35~50%차지) 우리한국에서도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는 차량연쇄 방화사건은 이런유형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연쇄차량 방화사례

1992. 2~8월 말까지 경남 삼천포시에 소재한 주차장에 14대의 승용차에 연쇄적인

방화가 발생하였다. 그후 방화범은 검거되었는데 범인이 진술하는 방화동기는, 자가용 소유자에 대한 막연한 증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바. 방화자살

방화를 자살의 수단으로 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이 유형에는 비관자살의 경우와 사회적저항 또는 격분이 방화자살의 동기이다. 일본의 경우 방화자살자가 전체 화재사망자의 35.1%로 높은 발생율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방화자살이 전체방화 동기중에 가장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동기별 유형은 가정불화가 1위이고, 비관자살이 2위이다).

▣ 방화자살의 사례

1996. 6. 15. 01:07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평소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부부가 다툼 후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것이다. 이 화재로 인하여 방화자 등 거주자 5명이 소사하였다.

사. 방화광(Pyromania)

방화광은 정신결합적 방화범죄로서 정신박약자, 이상성격자, 정신이상자로 구분된다. 정신결합적 정신병질자는 기분이상성 정신병질자의 유형에 속하며, 억울한 생각, 기분이 나쁜상태가 교차되는 발작증상을 보인다. 이때, 낭비, 방화, 폭행을 행한다는 것이다.²³⁾

방화광에 의한 방화는 거의 연쇄방화인데 방화광의 수는 적어도 이들이 연쇄방화를 하기때문에 방화화재의 발생율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뉴욕의 David Berkowitz는 3년동안 뉴욕시내에 거의 2,000여건이나 방화를 하였다고 자인하였다.²⁴⁾ 방화광이 선호하는 방화목표는 시내주택가의 쓰레기통, 야산지대의 덤불이지만, 때로는 빈집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도 방화를 한다.

23) 이상현, pp.55~62.

24) DeHAAN, pp.325.

바. 기타

방화동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이상과 같은 것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폭력/테러리즘(Terrorism)에 의한 방화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이나 사업경쟁상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목적을 비합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폭력시위용이나 테러형태로 방화하는 것이다. 국가공용시설이나 산업체는 특히 이런 유형의 공격목표가 되기 쉽다. 산업체의 창고나 빈건물, 그리고 항만시설이나 철도시설 등은 방화에 취약함으로 자체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산업체 테러 방화사례

1996. 12. 17 밤. 태국 산요 유니버설 일렉트릭사(일본산요 전자와 태국내 협작 투자회사)에 태국 근로자들의 소행으로 알려진 방화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연말 보너스의 감축과 공장이전 계획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합의농성을 해오던 중 발생한 방화로 노사분규상 최악의 불상사였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미상이나, 1억 바트(한화 32억) 상당의 재산손실을 보았다. 근로자들은 공장이 이전할 경우 생기는 대규모 해고에 항의의 뜻으로 방화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996. 12. 19 p.7면 기사).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례

1982. 3. 18. 14:00경. 부산시 중구 대청동 소재. 미문화원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관계를 이간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학생신분인 방화범(5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1억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방화범은 집요한 수사력에 의해 검거되었다.

3.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

방화범죄와 관련한 관심도는 방화범죄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미국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70년대부터 방화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part 1 crime)로 분류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방화범죄의 위험성, 심각성에 관심을 나타내어 방화범죄 전담연구기관인 “방화화재 예방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방화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등 국 가적 관심도는 높은상태이다.

우리한국의 경우는 방화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정도는 저조한 편이다.

한국인의 범죄및 화재에 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표4-2)에서처럼, 범죄와 화재에 대하여 우려를 느끼는 정도는 보통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화화재를 우려하는 정도는 이자료와 관련하여 볼때 이정도 수준에도 못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범죄와 화재를 우려하는 정도

관심도 구 분	계	느낀다	약간 느낀다	보 통	못느낀다
범 죄	100%	57.6%		19.9%	22.5%
화 재	99.1%	20.6%	36.6%	16.1%	25.8%

* 화재에서 0.9%는 무응답 처리

《출처 : 통계청, '94한국의 사회지표 p.293과 아시아 리서치, '94소방행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 p.12 에서 재작성》

V. 방화범죄의 예방대책

1. 방화범죄의 문제점 인지

가. 방화화재의 통계관리와 홍보마흡

우리한국도 선진외국들 처럼 산업사회화 진전에 따라 방화의 동기나 수법도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방화범죄의 동향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 일 등 국가에서는 방화화재의 통계관리에 있어 “방화를 원인으로 하는 화재”와 “방화의 의심이 있는 화재를 통합하여 방화성(incendiary)의 화재로 취급하여,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등 실태파악 및 대응에 정확한 자료로 삼고있다. 우리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방화를 원인으로 하는 것만 방화로 관리하고 있어 방화범죄관리의 사각현상과

통계상 암수의 소지가 예측되고 이로인한 일반사회의 방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방화의심이 있는 화재”가 방화에 의한 화재인 경우에도 계속수사 활동을 통한 범인검거가 소홀해 질 수 있다.²⁵⁾ 이런 통계처리상의 문제는 방화범죄의 실태파악에 오류를 생기게 하고 방화범죄의 대응을 위한 대민홍보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일반의 관심도를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나. 화재피해의 심각성 인식 부족

방화로 인한 화재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성이 크다.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율이 화재 100건당 2명정도 인데 비하여 방화로 인한 사망율은 7.4명으로 치사율은 방화가 3.5배 정도 더 높은 위험성이 있다. 또한 방화화재는 방화범이 범죄수단으로 불을 사용한다는 것과 1인의 방화범이 여러대상에 연쇄적으로 방화할 수 있어 사회공공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다. 방화범죄에 관한 전문연구 미흡

방화로 인한 화재는 일반화재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방화범죄의 대응에 이 특성과 방화범죄의 동향등을 정밀하게 파악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한국에는 방화범죄를 조사, 연구하는 전담연구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몇몇 연구가가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학회등에 발표하거나 한국 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일과성으로 연구할 정도이고, 이것도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라. 방화범죄의 전담수사와 공조체제 미흡

사회통제의 특수이론인 제지이론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은 법규위반율을 낮게 한다고 한다. 이 주장은 형법상의 특별예방 효과와도 상통한다고 보아, 방화범도 다른 범죄(살인등 강력범)같이 처벌의 확실성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범인필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한국의 일선 수사기관에는 방화사건 수사기능을 전담체계화 하지 못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그때그때 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정도이다.

25) 미국과 일본은 화재원인에 있어 방화를 원인으로 하는 화재가 전체의 화재원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한국은 방화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원인 가운데 3위이다.

마. 지역사회 관계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방화범죄 대응기관인 경찰및 소방등 관련 행정기관이 지역사회 주민등에게 방화범죄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제도화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Event는 매년 11월에 정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화재예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실화에 의한 화재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화에 대한 화재의 예방홍보는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2. 방화범죄의 대응 사례

이상과 같은 방화범죄의 통제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응책을 구상하는데는 먼저 외국의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 미국의 대응사례

(1) 예방과 연구

미국사회에서는 방화를 일종의 유행병(Epidemic)이며 전체지역사회에 도전하는 폭력(Viloence)이라고 규정하였다.²⁶⁾ 이에 사회공동대응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보험사와 다른 단체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여러 시와 주에서 설치한 기동합동연구반(The arson task forces)의 활동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방화화재의 예방노력이 시도되었다. 이와같은 예방활동에 의하여 1982~1983년간에는 방화가 13%나 감소되었다고 FBI는 밝히고 있다.²⁷⁾

현재 미국에는 방화문제를 연구하는 여러 전문연구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관단체로는

- Nation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dministration
-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 The Law Enforcement Assistance Administration(LEA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등이 있다.

26) Arson : America's Malignant Crime, Nation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76

27) Fire prevention, Vol. 186, Feb The arson situation in Europe. p.27

나. 방화의 조사체제

방화화재조사에 소방서, 경찰서, 보험회사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방화화재조사에는 보통 다음의 3가지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그것은 ① 소방서의 책임형식, ② 경찰서의 책임형식, ③ 공동책임형식이다. 공동책임형식은 가장효과적인 방식으로 공동참여기관의 조정과 통제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Indianapolice에서는 지역사회 공동 참여형식을 취하고 방화화재조 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공동위원회의 장점은 조사위원, 장비, 훈련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어 가장 적은 투자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고, 조사에서 조정관의 통제가 충분하여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 일본의 대응사례

일본은 1986. 6.23. 동경소방청에 방화화재예방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방화대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방화대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조사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구성 : 소방, 경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건축공학전문가 등
- 기 능 : 방화화재대책및 관련시책검토, 소방청에보고, 매월 1회 회의개최, 방화 홍보 활동
- 조사연구분야 : ① 도시계획, 건축환경면 ② 자주방화조직, 방화관리조직 ③ 법제, 행정면 ④ 사회심리, 청소년 교육면

방화화재대책위원회가 실시한 “방화화재 예방에 관한연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 성있는 방안들을 정책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부분의 방화화재 예방정책은 이연구자료를 참고 하였다.

라. 유럽국가의 대응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방화화재의 대응활동을 위하여 200여개의 보험관계회사(APSAIRD)가 합동으로 연구 대처하고 있다.

APSAIRD의 기능은 방화및 방화의심 있는 화재의 조사를 지원하고, 화재조사관을 선발하여, 조사보고서의 분석,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다.

방화화재 전문연구조사기구로는 중앙에 소방, 전직고위경찰관, 전문기술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방화화재조사위원회가 지방에는 40여명의 전담조사관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전직 경찰관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 방화관련정보 집중관리
- 보험사취 기준설정
- 정밀조사 감식기준 설정
- 전문가 교류
- 정보 자료의 교류 등이다.²⁸⁾

(2) 스웨덴

스웨덴은 1976년에 처음으로 경찰, 소방, 사회봉사단체, 보험회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시설주(Property Owners)등으로 공동구성된 "Local Action Group Against Arson"를 설립하고 방화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이 Group의 산하에 전국에 10개 대책반이 있으며, 주요활동은 정기 총회, 방화문제토론, 방화예방대책지원, 화재감식조사(소방, 경찰 합동), 학동교육실시, 화재조사, 예방업무수행 등이다.²⁹⁾

3. 방화범죄 대책을 위한 정책대안의 구상

앞에서 주요 외국의 대응방향에서 시사하는 바는 방화범죄에 대한 관심도이다. 방화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특정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의 방화범죄대응 활동의 방향으로는 법적·행정적 측면, 인적·사회환경적 측면등 분야별로 종합적 연구활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 법적·행정적 측면

방화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규정은 현행형법(방화죄등)과 소방법(소방시설파괴, 진화방해죄)에서 정해두었고 별칙도 매우 엄격하여, 제지이론에서 말하는 엄격성의 확보에

28) Fire Prevention, Vol. 190, 1986 June Arson in France

29) Fire Prevention, No. 188, 1986. 4.pp.28~30.

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방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이 방화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자체경계를 강화할 방법시설물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경찰 관직무집행법등을 개정, 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는 ① 방화범죄와 관련한 자료의 적정관리 ② 전문적인 연구기 관설치 ③ 방화범인의 필검체제와 수사및 조사의 공조체제 확립을 필요로 한다.

이를 차례로 나누어 검토하면 첫째, 자료의 적정관리이다. 화재의 원인이 방화에 의한 화재(명확한 방화사건)뿐만아니라 화재의 진행이나 정황으로 보아 방화에 의심이 있는 화재도 방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건관리를 함으로서, 방화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실한 홍보자료로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방화범인을 추적 필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전문연구기관의 설치이다.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체계있는 연구의 결과는 방화 범죄의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방화범죄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은 현재의 관련연구소에 병설하는 방안과 보험회사등 방재단체의 협약형식으로 설치공동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이나 기타 방재연구단체에서도 상설기구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방화범죄의 전담수사팀의 운영이다. 방화범죄의 수사에 관한 교육, 훈련을 이 수하고 수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수사요원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하여 수사 전담 Team을 구성, 방화범죄 수사에 전문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화재원인조사의 공조체제 확립이다. 화재조사에 있어 초동단계부터 현장조사나 화재감식을 실시할 때 화재조사전문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조사전문가 등이 공조 조사하여 화재원인(방, 실화)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조사의 공조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나. 인적 · 사회환경적 측면의 대안

방화범죄의 일반적 동기에는 소비생활이 고급화된 생활환경, 개인주의적 인간관계, 윤리, 도덕 등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과 관련하

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첫째, 청소년 선도 program의 개발과 활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범인성 유해환경과 격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 작성에는 청소년 상담역이라 할 수 있는 학교교사와 정신과의사 그리고 청소년 선도담당 경찰관 등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관계개선이다. 방화범죄의 대응에는 관련행정기관과 단체와 지역사회 주민간의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지역사회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원 봉사단체(예컨대 의용 소방대 조직이나 자율방법조직)나 자생적 Group 등과 접촉하여 필요한 방화관련 정보를 투입하는등 홍보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특히 고려하여야 할 대상은 산업체의 자율방화 관리체제이다. 산업체는 방화범이 목표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 스스로 자기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의 자율방호방법에는 울타리치기(Fencing), 방 범등의 설치, 경보시설 등 기계경비, 창고 등의 시건장치 등이 적당할 것이다.

한편, 민간경비차원에서 자체경비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취약대상(지역 또는 건물)의 출입자 통제, 수상한자의 휴대품조사, 시설물의 점검, 순찰 등 인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체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안요원의 높은 사기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시설주는 경비원이나 안전요원 등의 사기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적극협력하고 신분적 보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법의 개발이다.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곧 관심도를 제고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관심도는 일반국민과 정부당국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들이 방화범죄의 실태를 정당하게 인지하고 공감하는 정도인데 이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홍보기법은 이미 알려진 여러가지 모형이 활용될 수 있겠으나, 교육은 그내용이 방화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형태를 변화시킬수 있도록 계획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육계획은 ① 초기단계 ② 실행단계 ③ 평가단계 등 단계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이런 계획수립에는 사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계획수립에는 전달측이 전달매체를 통하여 피전달측에게 필요한 방화관련 정보를 투입하고, 피전달측이 정보를 환류하는 과정이 연쇄적이어야 할 것이다.

즉 ① 홍보자료의 수집·정리 ② 홍보매체를 통한 정보의 투입 ③ 평가 ④ 환류의 단계적 계속적이고도 연쇄적으로 진행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축 방화환경의 개선이다. 대부분의 방화화재 대상은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그 구조상 방화의 내화성능과 범인성요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공학적 연구가 이미 시도되고 있어 이분야 선행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건축환경에서 보는 방화예방에는 영역성과 감시성의 양면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영역성은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범죄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방화시 자동 소화가 가능한 시설상의 System이 될 수 있다. 감시성은 방화가 예상되는 시설이나 취약지점에 감시사각을 없게하는 시도로서 민간경비 활동의 일환인 기계경비 설치나, 방범보안등 기타감시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몇가지 방안을 추진함에는 중앙및 지방 행정기관 단위별로 가칭 “방화범죄(화재)대책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경찰및 소방전직간부, 소방및 건축 관계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화재보험조사전문가, 교사, 정신과의사등 사계의 전문가를 참여케하고 수시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 론

1. 요 약

지금까지 방화범죄에 대한 특성과 대응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 되는 문제는 ① 방화범죄의 급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비하여 방화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관심이 저조하다는것과 ② 방화범죄의동기가 종전의 범죄인의 인성적, 정신적 결함에서 경제적 또는 범죄은닉 목적으로 그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어, 방화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화범죄의 실태 분석에 의하면 우리한국의 방화범죄 추세는 발생면에서 다른 강력 범죄 또는 전체 일반화재의 증가율보다 더높고, 미국이나 일본등 주요 외국의 증가율 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는 불을 범죄의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현주건물이 방화의 목표일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공공위태범으로 그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잘알려져 있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방화범죄에 대한 형법법규의 엄격성(형법 제 164조내지 제169와 소방법제 110조내지 제111조)과 방화범을 강력범으로 분류하여 처벌의 가능성 을 확실히하는 확실성의 보장도 제도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방화범죄의 발

생추세가 다른 범죄나 외국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은 방화화재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전체적인 관심도가 저조한것으로 보아 정책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방화범죄의 특성분석에서는 ①발생지역이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던 경향이었으나 도시이외의 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더높은 증가율을 보이므로 방화범죄의 발생지역이 전국적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②방화범죄는 주간 시간대(25.12%)보다 주로 야간시간데에 발생하여(56.7%) 범인이 야음을 타고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행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방화범은 현행범의 체포와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대부분(82.9%) 검거되고, 수사활동이나 자수에 의해서 검거되는 정도는 11.2%에 불과하다. 검거기간은 대부분이 범행당일에 검거되지만, 검거까지 1년이 상이 걸리는 경우도있다. 이것은 방화범수사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방화범의 연령별 구성비는 살인, 강도, 강간에 비하여 30대가 가장많으나, 50대이상 고령층에도 상당수의 분포비율을 보여, 방화범인의 고령화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 ⑤ 방화범인의 교육정도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등이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⑥ 전과회수별 구성비는 초범자 이외에 전과 4범 이상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인성형성과정에 있는 초,중등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재검토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정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방화범죄의 동기별사례는 방화범인 개개인의 인성적 결함에 의한 동기이외에 원한관계, 분노, 경제적 이익사취목적, 악희목적, 다른 범죄의 증거 인멸목적 또는 사회적 저항, 폭력, 협박의 수단등 그 동기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특히 방화자살 및 동반자살의 경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실태를 범죄이론과 관련지어 볼때 방화화재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하며 자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점은 Durkheim의 Anomie적 자살론이나 Merton의 사회적 아노미의 이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것 같다. 특히 산업체의 방화에서는 Merton의 아노미에 적응하는 방식가운데 혁신형이나 반역형의 적응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방화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방화화재의 대책으로 미국은 예방활동을 위한 전문연구활동을 대부분의 시나 주에서 관련기관 합동의 「arson taskforces」를 운영하는 외 중앙정부 단위의 여러 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불란서나 스웨덴도 방화화재예방연구전담기구를 운영하여 매우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일본도 이와같은 대응방향으

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방화범죄의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범적인 측면에서는 방화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필요로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① 방화범죄의 정확한 통계관리, ② 방화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설치 ③ 방화범인의 필검체제와 전문수사 인력확보, 방화화재 조사의 공조체제확립을 위한 재도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적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심리, 청소년교육등 방화로 인한 화재의 인식제고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실용화추진이다.

셋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① 행정당국, 주민, 교육기관, 언론매체등 지역사회 구성요소들의 협력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 프로그램화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② 방화환경에 취약한 인원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대상별 특별방화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 등을 요약하여 방화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2. 뜻 는 말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일차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위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화는 관리가 비교적 소홀한 대상을 범죄의 목표로 한다는점에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인 활동보다 시설물의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방화관리를 더욱 필요로 한다.

Clifford L. Karchmer는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떤지역이 방화범의 목표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는 말처럼, 시설물의 관계자는 방화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시설에 대한 방화대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으로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단체들은 새로운 방화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적시에 배포하여 자율방화관리의 실효를 기할 수 있게 협력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화범죄는 모방성이 강하며, 유행병처럼 전파한다는 특성을 인식하여 모방성범죄화 양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안들을 정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방화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결정요소임으로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에 시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By Choi Jong Tae

This article is the resea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problems presented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known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lized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e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

(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 (82.9%).

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ei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ei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sonis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e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a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e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as of local govern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n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nomen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s a epi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ce of crime of arson.